

법률 제 14868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0.03퍼센트”를 “0.02퍼센트(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로 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4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제78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12. 제47조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81조제1항제11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p> <p>1.·2. (생략)</p> <p>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u>「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u>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4.·5. (생략)</p> <p>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u>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u></p>	<p>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 <u>「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u>----- ----- ----- -----.</p> <p>4.·5. (현행과 같음)</p> <p>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p>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

-----.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 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0.02 퍼센트(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

2. (생략)

④ (생략)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제78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3의2. (생략)

<신설>

4. ~ 6.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3. (생략)

트)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1. ~ 5. (현행과 같음)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7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 제3의2호와 같음)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6. ~ 8.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③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15. ~ 18.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략)

<신설>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11. 제47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12. ~ 18. (생략)

② ~ ⑤ (생략)

<삭제>

15. ~ 18. (현행과 같음)

④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47조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81조(과태료)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제7호-----

12. ~ 1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